

인천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66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665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409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박재용

변론종결 2023. 3. 7.

판결선고 2023. 3. 2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24094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에 2017. 5. 8.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2. 25.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들은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등 주장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① 원고가 적어도 D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2019. 6. 12.에는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② 채무자인 D이 주식회사 Q에 대한 채권(173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자력을 회복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으며, ③ P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주었으므로, 제1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D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시점에 제1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7조), 무자력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D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제1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D의 자력이 회복되었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D의 재산상태나 자력회복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Q에 대한 채권(173억 원)을 D 명의의 재산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자력회복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라. P의 보증행위로 인해,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보장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채권자의 변제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적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상 P의 사실상 소유자인 D이 P 명의로 원고에 대한 D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작성한 정은 엇보이나(을 제13호증의 첫 페이지 참조), 설령 법인인 P의 원고에 대한 보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연대보증인지 혹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위 모두를 포괄하는 인적담보 부가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인적담보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윤민욱, 판사 이상수

별지